

제 정	1973. 2. 28
개 정	2025. 3. 19



정 관

삼성전기주식회사

<https://www.samsungsem.com>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1
제2조 (목 적)	1
제3조 (소 재 지)	2
제4조 (공고방법)	2

제 2 장 주 식

제5조 (수권자본)	2
제6조 (일주의 금액)	2
제7조 (주식의 종류)	2
제7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3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	3
제8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4
제9조 (삭제, 2020. 3. 18)	4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4
제10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4
제10조의 3 (일반공모증자)	5
제1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5
제10조의 5 (주식의 소각)	6
제11조 (삭제, 1992. 2. 28)	6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6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7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7
제14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8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5조 (소집시기)	8
제15조의 2 (소집권자)	8
제15조의 3 (소집통지 및 공고)	8
제16조 (소집지)	8
제17조 (의 장)	9
제17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9
제18조 (의결권)	9
제19조 (의결방법)	9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9
제21조 (의사록)	9

제 4 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제22조 (이사의 선임)	10
제22조의 2 (사외이사)	10
제23조 (이사의 임기)	10
제24조 (이사의 결원보선)	10
제25조 (이사의 직무)	11
제25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1
제26조 (이사회)	11
제26조의 2 (위원회)	11
제26조의 3 (경영위원회)	11
제26조의 4 (감사위원회)	12
제26조의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2
제27조 (이사회 의장)	12
제28조 (이사회 소집)	12
제29조 (이사회 의결)	12
제30조 (이사의 경업 금지)	12
제31조 (삭제, 2000. 3. 16)	12
제31조의 2 (삭제, 2000. 3. 16)	13
제31조의 3 (삭제, 2000. 3. 16)	13
제31조의 4 (삭제, 2000. 3. 16)	13
제32조 (이사의 보수)	13
제33조 (이사의 퇴직금)	13
제34조 (삭제, 2000. 3. 16)	13

제 5 장 계 산

제35조 (사업년도)	14
제36조 (이익금의 처분)	14
제37조 (이익배당)	14
제38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4

제 6 장 부 칙

제1조 (세칙제정)	15
제2조 (적용범위)	15
제3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15
제4조 (시행일)	16
제5조 (경과사항)	16
제6조 (시행일, 1998. 3. 20)	16
제7조 (시행일, 1999. 3. 19)	16
제8조 (시행일, 2000. 3. 16)	16
제9조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 규정)	16
제10조 (시행일, 2020. 3. 18)	17
제11조 (시행일, 2025. 3. 19)	17

삼성전기주식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삼성전기주식회사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ELECTRO-MECHANICS CO.,LTD.라 기술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의 제작, 판매업
2. 통신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3. 의료기기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4. 광원 응용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5. 전자계산조직, 정보시스템, 동 관련제품 및 부품, 부속품의 제작, 판매업
6. 소프트웨어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7. 산업제품 및 그 부속품, 자동차 관련부품, 전장품 및 그 부속품의 제작 및 판매업
8. 자동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9. 전자, 전기, 공작기계 및 설비등의 Plant 판매와 기타 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10. 합성수지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11. 금속의 제련, 가공 및 판매업
12.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13.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14. 경제성 식물의 재배 및 판매업
15. 물품 매도확약서 발행업
16.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7. 기술관련용역 제공, 서비스 및 Know-How의 판매·임대업
18. 소방용 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19. 전선 및 전선관련 기기류의 제작, 판매, 시공업
20. 교육, 인증관련 CONSULTING 서비스업 및 관련사업

21.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
22.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사업, 관련 부품 기기 S/W의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23.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업
24.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 판매업
25. 반도체제조를 위한 원부자재의 제조, 판매업
26. 각 항에 관련된 시스템사업, 부속품 제조, 부대사업 및 투자

제 3 조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msungsem.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20. 3. 18>

제 2 장 주 식

제 5 조 (수권자본)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

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삭제, 2020. 3. 18>

제 7 조의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20. 3. 18>

제 8 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20.3.18>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

제 9 조 <삭제, 2020. 3. 18>

제 10 조 (신주의 인수권)

1. 본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7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제10조의 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마. 제10조의 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7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조의 3 (일반공모증자)

1.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5 (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1 조 <삭제, 1992. 2. 28>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전에 신문에 공고한다.
2.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일조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삼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사이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7조 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사천오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오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37조 제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20. 3. 18>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5 조 (소집시기)

1. 본 회사는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의2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 15 조의3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6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의 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 17 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 19 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써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 21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2 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9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한다.
2.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회사를 대표한다.
3.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4. 선임은 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의2 (사외이사)

1.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4 조 (이사의 결원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5 조의 2 (이사의 보고업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2.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26 조의 2 (위원회)

1.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가. 경영위원회
 - 나. 감사위원회
 -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라.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의3 (경영위원회)

1. 이사회 결의로 제26조 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의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3.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의4 (감사위원회)

1. 이사회는 결의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6 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이사회는 결의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28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12시간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0 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삭제, 2000. 3. 16>

제 31 조의 2 <삭제, 2000. 3. 16>

제 31 조의 3 <삭제, 2000. 3. 16>

제 31 조의 4 <삭제, 2000. 3. 16>

제 32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제 33 조 (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 <삭제, 2000. 3. 16>

제 5 장 계 산

제 35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 1회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 36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 37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본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일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3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세칙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조 (준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 3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의 주소과 성명은 말미기재와 같다.

차 삼성산요파츠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일구칠삼년 이월 이십팔일

수원시 매탄동 삼백삼십 번지

삼성산요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우 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칠일번지의 이

조 우 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번지의 사오

시범아파트 십오동 삼삼호

장 기 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이가 일육육번지의 일

신 훈 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일동 삼이육번지의 사

이 년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이오사번지의 십사

김 동 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사일구번지의 이

최 경 택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의2, 제26조, 제30조, 제31조의 2, 제31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영업년도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경과사항)

본 정관개정은 1997년 2월27일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 6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5항(이사의 선임중 집중투표제), 제24조의 2항(이사의 결원 보선중 집중투표제)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실시한다.

제 8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3월 16일 본조 신설)

제 9 조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 규정)

1.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2000년 3월 16일 본조신설)
2. 제23조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2000년 3월 16일 본조신설)

제 10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3월 18일 본조 신설)

제 1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3월 19일 본조 신설)

1973년	2월 28일	정 관 작 성
1973년	8월 11일	1차 정 관 개 정
1973년	9월 3일	2차 정 관 개 정
1973년	9월 28일	3차 정 관 개 정
1974년	3월 20일	4차 정 관 개 정
1977년	5월 1일	5차 정 관 개 정
1977년	11월 10일	6차 정 관 개 정
1978년	11월 9일	7차 정 관 개 정
1978년	11월 23일	8차 정 관 개 정
1979년	2월 26일	9차 정 관 개 정
1984년	2월 27일	10차 정 관 개 정
1985년	2월 26일	11차 정 관 개 정
1987년	2월 26일	12차 정 관 개 정
1988년	2월 26일	13차 정 관 개 정
1989년	2월 27일	14차 정 관 개 정
1990년	2월 26일	15차 정 관 개 정
1991년	2월 25일	16차 정 관 개 정
1992년	2월 28일	17차 정 관 개 정
1994년	2월 24일	18차 정 관 개 정
1995년	2월 23일	19차 정 관 개 정
1996년	2월 22일	20차 정 관 개 정
1997년	2월 27일	21차 정 관 개 정
1998년	3월 20일	22차 정 관 개 정
1999년	3월 19일	23차 정 관 개 정

2000년	3월 16일	24차	정 관 개 정
2001년	3월 9일	25차	정 관 개 정
2002년	2월 28일	26차	정 관 개 정
2005년	2월 28일	27차	정 관 개 정
2010년	3월 19일	28차	정 관 개 정
2016년	3월 11일	29차	정 관 개 정
2020년	3월 18일	30차	정 관 개 정
2025년	3월 19일	31차	정 관 개 정